

# (사)한국정밀공학회 정관시행규칙

제정 1987년 2월 1일

개정 2015년 5월 14일

## 제7장 편집위원회

### 제42조(업무)

본 위원회는 한국정밀공학회의 국문학술지(한국정밀공학회지, 이하 학회지라 한다), 영문학술지(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,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-Green Technology, 이하 각각 IJPEM, IJPEM-GT라 한다)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### 제43조(구성)

- ① 본 위원회는 편집업무에 따라 한국정밀공학회지 편집운영위원회, IJPEM 편집운영위원회, IJPEM-GT 편집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기타 다른 간행물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해 해당 간행물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는 각 간행물의 편집장(Editor-in-Chief)을 포함한 편집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를 총괄하는 편집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한다.
- ③ ①항에 의해 구성되는 간행물 별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44조

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### 제45조(운영위원 위촉)

각 간행물별 운영위원 위촉은 별도의 간행물별 운영규정에 따른다.

### 제46조

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### 제47조

본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